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누301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3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4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5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4. 10. 2. 선고 2014구합31180 판결
환송전판결	서울고등법원 2015. 7. 3. 선고 2014누67293 판결
환 송 판 결	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두48372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4. 12.
판 결 선 고	2016. 4. 26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 대하여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9. 10. 한 재산세 1,005,114,970원의 부과처분 중 933,651,300원을 초과하는 부분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청장이 2013. 9. 10. 한 재산세 85,215,450원의 부과처분 중 79,156,640원을 초과하는 부분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9. 10. 한 재산세 27,750,800원의 부과처분 중 25,777,720원을 초과하는 부분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3. 9. 10. 한 재산세 4,560,490원의 부과처분 중 4,236,240원을 초과하는 부분, 피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2013. 9. 10. 한 재산세 2,910,210원의 부과처분 중 2,703,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1행의 "점" 다음에 ", ⑤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(2014. 3. 24.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"을, 제8면 제3행 "상당하다" 다음에 "(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3346 판결 참조)"를, 제8면 제15행 "것이다" 다음에 "(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두44196 판결 참조)"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5-26

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상열

판사 정봉기

판사 조용래